

청탁금지법 한눈에 보기

추진목적

부정청탁, 금품 등 수수 근절을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

적용대상

1. 공공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
2. 공직자 등 : 지방공무원, 공직유관 단체장과 임직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3.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

공무수행사인 유형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 받은 자
-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 심의/평가업무담당하는 외부전문가 등

① 부정청탁 금지

금지 내용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제재 내용

제재 대상	제재 종류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 등)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외 사유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 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하는 행위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② 금품 등 수수금지

금지 내용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금지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제재 내용

제재 대상	제재 종류
1회 1백만원(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예외 사유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선물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분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내가 했던 부탁, 남에게는 청탁"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정립 슬로건 공모전 수상작)